

영유권 분쟁지역내 자원개발 사례분석

정 준 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hjung@keei.re.kr)

류 권 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kh268@gmail.com)

1. 서론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화석연료의 중요성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 에너지시장은 물론 각국의 에너지정책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과 스웨덴이 이미 원자력 발전 포기 선언을 하였고, 일본도 2012년 5월 5일 홋카이도(北海道)의 도마리(泊)원전 3호기의 운전정지로 모든 원자력 발전기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에너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자원을 개발하려는 국가들 사이에 자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동중국해, 남중국해 및 태국만(Gulf of Thailand) 등에서 이해관계국 간 해양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상충되고 있으며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해당 지역에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원개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에 대한 일

본과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으며, 동중국해 지역의 대륙붕개발에 관하여 중국 및 일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체결한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자원 개발에 대해서도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한 개발 지연 문제와 해당 구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잠재적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영유권분쟁과 관련된 논의는 우선 천연자원의 귀속 원칙에 대한 검토와 어떻게 국가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자원개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석유나 gas와 같은 천연자원의 매장지가 인위적으로 정한 국경선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고, 또한 그 경계선을 넘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자원이 존재하고 있는 영토와 영해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의 문제는 천연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결정하는데 선결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석유 및 가스자원의 소유권 귀속문제와 국가 간 경제협력 문제에서는 관련된 이해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며, 국가 간 협의의 내용은 이해당사국의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및 군사적 관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개발권을 획득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쟁점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영토 및 자원개발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영토분쟁의 위험으로 인해 자원개발 기업이 취득한 천연자원 개발권 가치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대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경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개발권자가 취득한 개발권에 보장된 탐사 및 개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개발권자가 기존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영토 및 자원에 대한 분쟁 가능성과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본고에서는 영유권 분쟁지역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각 분쟁지역 사례의 특성과 공동개발구역 방식의 자원개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영유권 분쟁은 없지만 자원 소유권에 대한 분쟁지역에서는 광구 통합에 의한 자원개발 사례들을 통한 합리적인 개발 전략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를 통해 자원에 대한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자원개발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자원소유권의 귀속

1) 자원주권주의

2차 세계대전 후, 유엔 총회결의를¹⁾ 통해 자원민족주의가 국제법의 원칙 중 하나로 확립되었다.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법적으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부와 자원을 처분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국제석유회사(IOC)의 자원개발 운영권에 대한 통제와 천연자원의 개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²⁾

자원주권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그 제목도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주권(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인 1962년 유엔결의 제1803호에 따르면,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항구주권은 국민의 복지와 해당 국가의 개발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선언되고 있다.³⁾

한편, 자원주권주의는 자본 수출국인 주요 서방국가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자원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자원보유국(Host Countries)이 국유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절차적 제한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되어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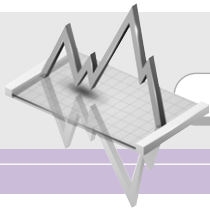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2. 자원소유권의 귀속 및 경계획정에 관한 원칙

2) 선점의 원칙⁵⁾

1) 1952년 제626호, 1962년 제1803호, 1966년 제2158 및 1974년 제3281호 등의 총회결의를 들 수 있음.

2) Paul Stevens, 'National oil companies and international oil companies in the Middle East: Under the shadow of government and the resource nationalism cycle' (2008) 1(1) Journal of World Energy Law and Business 5.

3) 1. the right of peoples and nations to permanent sovereignty over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must be exercised in the interest of their national development and of the well-being of the people of the State concerned.



미국은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대지의 소유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법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의 역사가 호주와 같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와 같은 중요 지하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시행한 영국이나 호주와는 다르게 보통법과 로마법의 전통적 원칙인 ‘천상에서 연옥까지의 원칙(ad coelum doctrine, Heaven to Hell)’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같은 ‘천상에서 연옥까지의 원칙’은 자원소유권에 대한 법적분쟁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적 해결책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점의 원칙이다. 선점의 원칙은 비록 압력 차이로 인해 인접한 타인 소유의 대지 하에 있던 원유가 생산자의 대지 아래로 이동하였더라도 생산자가 자신의 대지 위에 설치된 유정을 통해 생산하였다면, 이동된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선점의 원칙을 확

인한 것이 1897년의 Kelly v Ohio Oil Co. 판례이다.⁶⁾

미국에서 확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선점의 원칙이 국제적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미국의 환경과 법률체계가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는 차원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선점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란과 아부다비 사이에 존재하는 Sassan 또는 Abu al Bukoodh 유전에 대해서 이란 혁명과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이란측의 생산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부다비는 지속적으로 석유를 생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란 측에 존재하던 석유가 아부다비 쪽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 아부다비가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이란에게 일정한 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점의 원칙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국제적 자원개발은 선점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당사국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당사국의 정책이 무엇이든 자국의 생산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아부다비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⁷⁾

4) Article 1, Every State has the sovereign and inalienable right to choose its economic system as well as it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its people, without outside interference, coercion or threat in any form whatsoever.

Article 2. Each State has the right:

To nationalize, expropriate or transfer ownership of foreign property, in which case appropriate compensation should be paid by the State adopting such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it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all circumstances that the State considers pertinent. In any case where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gives rise to a controversy, it shall be settled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nationalizing State and by its tribunals, unless it is freely and mutually agreed by all States concerned that other peaceful means be sought on the basis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 choice of means.

5) 사회적 필요에 의해 발달된 법리라는 의미에서 ‘변의의 원칙’, 또는 선점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무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불리고 있음.

6)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신의 토지 위에 유정을 뚫거나 석유를 생산하는 것은 절대적 권리이며, 법원이나 주위 토지 소유권자에 의해 감독되거나 통제되지 않음. 유전 개발이 합법적이라면, 그 합리성은 문제가 되지 않음.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등의 행위를 결정하기 전에, 주변 토지의 소유자 또는 법원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라고 여길만한 무엇인가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 석유는 자원이며, 그것이 땅 속에 있는 동안은 그 토지의 일부를 이루고, 침투로 인해 장소를 옮겨 다니기도 함. 그리고 석유가 일정한 토지 아래 머무른다면 그것은 당해 토지의 일부가 되고, 만약 인접한 대지 아래로 이동한다면 석유는 다시 이동한 새로운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것임. 또한 유정이 유전에 이르기까지 석유는 당해 토지의 일부를 이루다가, 대지 위로 끌어 올려진 때 처음으로 토지로부터 분리된 별개 소유권의 목적 즉, 동산(動産)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음.

7) R. Bundy, ‘Natural Resource Development(Oil and Gas) and Boundary Disputes’ (1995) G.H. Blake(ed), The Peaceful Management of Transboundary Resources p. 23.



3) 협동의 원칙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법적으로 선점의 원칙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은 협동의 원칙보다 선점의 원칙이 우선시된 국제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선점의 원칙을 적절하고 적용 가능한 원칙이라고 선언된 사례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⁸⁾

또한 공동개발 또는 광구통합이 현실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선점의 원칙이 국제적 원칙이라는 주장의 논거는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유엔 국제해양법 제77조 제2항에 나타난 정신을 근거로 협동의 원칙이 주장되기도 한다.

선점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2005년 네덜란드 최고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네덜란드 대륙붕의 Logger 유전 중 블록 Q1은 Unocal에, 블록 L16과 L16a는 Conoco에 각 개발권이 부여되었는데, L16과 L16a에 설치한 Conoco의 탐사정들이 Q1구역으로부터 각 약 88m와 23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르면 개발권역의 경계에서 125m 내에서는 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해 Unocol은 Conoco가 자신의 배타적 개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에서 최고법원은 다른 개발권이 부여된 인근지역으로

부터 석유를 추출한 경우 개발권자는 인근지역에서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른 개발권자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1974년 유엔결의 제3281호,¹⁰⁾ 국제해양법 협약 및 최근의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자원소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으로 선점의 원칙보다 협동의 원칙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경계획정과 관련된 국제법의 원칙

1) 육상경계의 획정과 국제법

영토를 보유한다는 것만큼 경계가 분명하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영토의 보유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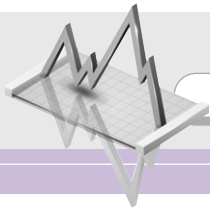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이런 영토분쟁에서 각 국가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9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은 조약, 지리적 상황, 경제적 관련성, 문화적 동질성, 실효적 지배, 역사적 상황, 현상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 우월주의(Elitism), 그리고 이념(Ideology) 등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국경분쟁 사례의 대부분은 위의 근거들을 복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 실효적 지배, 현상유지의 원칙만이 국제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근거로 인정되어 오고

8) David N. Ong, 'Joint Development of Common Offshore Oil and Gas Deposits: "Mere" State Practice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1999) 9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71.

9) Unocal Netherlands B.V., et al., Continental Netherlands Oil Company et al, No. C04/127HR, LJN AT537.

10)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제3조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걸쳐 존재하는 천연자원의 개발은 다른 국가들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 사전 협의와 정보공유에 기초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음.



있다. 조약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인 문서이므로 국제법적인 효력을 근거로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¹¹⁾

현상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은 남아메리카,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¹²⁾ 식민지 시대에 정해진 국경을 유지하여 국경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되고 있는 원칙이다.¹³⁾ 특히 남미가 스페인의 식민지 상태에서부터 독립할 때, 국경에 관한 묵시적 원칙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 세계적으로 수용되게 되었다.¹⁴⁾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란 분쟁대상 영토 및 해당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의미하며, 많은 사례에서 실효적 지배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¹⁵⁾ 실효적 지배는 영토를 취득하는 방식 중 특히 선점(Occupation) 및 시효(Prescription)에 의한 취득과 관련하여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논의되고 있다.¹⁶⁾ 실효적 지배의 필수적 사항은 해당 영토에 대한 국가 기능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으며,¹⁷⁾ 무엇이 국가기능의 수행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행이 필요한지가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 해양경계의 획정과 국제법

국제해양법은 해양의 자유 보장과 연안국의 주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주요원칙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해양 강대국들이 주장하는 해양자유사상이 우세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와 국가의 주권 강화 경향에 따라 연안국들이 인접한 바다에 대한 주권적 지배 주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해 뿐 아니라 접속수역, 어업보존수역,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등 새로운 개념의 해양관할권이 형성되고 있다.

19세기 후반까지는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이 탄착거리원칙(Cannon Shot Rule)에 의해 결정되었다. 탄착거리원칙은 해양 관할권을 확보하려는 목적보다는 연안국의 자위권 보호 차원에서 설정된 원칙이었으며, 각 국가의 기술 수준에 따라 탄착거리가 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에는 해양경계의 획정에 관한 기준들이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되지도 않았다.¹⁸⁾

1958년의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공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High Sea), 대륙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ntinental Shelf),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1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38조는 조약, 관습, 법의 일반원칙을 법원으로 국제법학자들의 학설을 법원의 보조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12) 아프리카연합(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Article 4 Principles The Union shall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b) respect of borders existing on achievement of independence.

13) 대표적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1986년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 v Republic of Mali) 사례임.

14)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 2008) 129-130.

15) 대표적인 사례는 Island of Palmas case (Netherlands, USA) RIAA(1928) 중재를 들 수 있음.

16) Martin Dixon, Textbook on International Law, (6th ed, 2007) 155-160.

17) 국제사법재판소의 2002년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판결에서는 국가의 행위가 해당 영토와의 관련성을 강조하였음.

18) David D. Caron,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and the Coming Uncertainty in Oceanic Boundaries: A Proposal to Avoid Conflict' (2009) Maritime Boundary Disputes, Settlement Processes, and the Law of the Sea.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 등 4 가지 협약을 포함하는 제네바 협약과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통해 해양경계획정의 흐름이 정리되었다.

해양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사항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인해 해양에 관한 연안국의 관할권이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의 채택을 통해 200해리¹⁹⁾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지구 해양의 약 30%가 넘는 구역이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구역이 되었으며, 이와같은 해양 관할권의 확장은 인접하는 국가 또는 대항하는 국가간의 해양경계획정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영해나 접속수역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경향을 정리해본다.

가) 해양경계획정의 기준

해양경계의 획정에 관해서 1958년 영해협약²⁰⁾과 대륙붕협약²¹⁾에서 확인된 것이 등거리 원칙(Equidistance rule)이었다. 등거리원칙은 예측가능성과 우연성, 객관성과 재량적 판단 사이에서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강조한 원칙이다.

그러나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 의해 등거리원칙은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고,²²⁾ 해양경

계(특히 대륙붕)획정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로 인해 등거리원칙보다 형평의 원칙이 우선하게 되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와 83조에서 등거리 또는 중간선이라는 표현도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해양경계획정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방법은 등거리원칙을 기본으로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조정하는 2단계 접근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1993년 Greenland와 Jan Mayen 섬을 둘러싼 Norway와 Denmark 사례와 2001년 Qatar와 Bahrain간 사례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등거리원칙이 가지는 예측가능성과 상황에 적합하게 경계를 획정할 수 있는 형평의 원칙이 가지는 장점을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²³⁾

나) 2002년 Cameroon/Nigeria 사례 - 등거리원칙의 적용

국제사법재판소는 인접국가인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례에서 당사국들은 영해·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단일한 경계를 획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물론, 이 사례에서 당사국들은 먼저 등거리원칙에 따른 선을 획정한 다음 형평에 맞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선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19) Nautical Miles, 1,852m가 1해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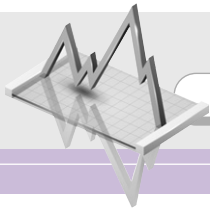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20) Geneva 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21) Geneva Convention on Continental Shelf.

22) 196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para, 70-77.

23) 2001년 Qatar/Bahrain Case, para, 176.

24) Cameroon/Nigeria Case para, 88.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 원칙에 따른 경계획정 방법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²⁴⁾ 영해를 벗어난 지역에 대한 경계의 획정과 관련하여 ‘첫째 잠정적으로 등거리 선을 획정한 다음 두 번째 그 선을 수정해야만 하는 다른 상황이 존재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²⁵⁾

그러나 Cameroon과 Nigeria 사례에서는 등거리 원칙에 따라 정해진 경계를 수정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거리 경계가 아무런 수정 없이 채택된 최초의 결정으로 등거리 원칙이 국제적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영유권 미확정지역에서의 자원개발 사례 분석

가. 영유권 미확정지역에서의 자원개발 방안

영유권 미확정지역에서의 자원개발을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국제법이 정하는 합의 또는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경계를 획정한 다음 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유엔헌장 제33조에는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

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합의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²⁶⁾ 유엔 해양법협약도 Part XV에서 분쟁해결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분쟁은 평화적인 분쟁해결로²⁷⁾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다만, 영토분쟁은 국가주권의 존중이라는 또 하나의 국제법 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당사국은 강제적 해결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²⁹⁾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영유권이 확정된다면 자원개발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안정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해당사자들 간 분쟁해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영유권 분쟁해결에 수십 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긴 시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분쟁의 해결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나. 공동개발방식

25) Ibid para, 289.

26) Article 33(1) The parties to any dispute, the continuance of which is likely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hall, first of all, seek a solution by negotiation, e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resort to regional agencies or arrangements, or other peaceful means of their own choice.

27) Article 279 Obligation to settle disputes by peaceful means

States Parties shall settle any dispute between them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by peaceful mea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paragraph 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this end, shall seek a solution by the means indicated in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harter.

28) Article 280 Settlement of disputes by any peaceful means chosen by the parties

Nothing in this Part impairs the right of any States Parties to agree at any time to settle a dispute between them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by any peaceful means of their own choice.

29) 우리나라도 2006년 4월 18일 유엔 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 (a)호 · (b)호 · (c)호에 관한 분쟁에 대한 적용 예외를 선언하였음.

1) 공동개발방식의 개념

공동개발 방식은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분쟁은 해결하지 않은 채 당사국들의 합의하에 공동개발 구역 내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도록 합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분쟁지역에서의 석유·가스의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사국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경우에 분쟁이 중국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실리적 차원에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선택되는 방식이다.

공동개발 방식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국간에 몇 가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어야 한다. 우선 분쟁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가능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는 이해 당사국의 의지이다. 즉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관련 국가들 사이에 공통된 의견이 형성되어야 공동개발 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

그리고 영토분쟁은 조속히 해결되기 어려우며 영토 분쟁이 관련 당사국 사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이다. 그러므로 공동개발 방식이 유효하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공동개발 협정이 더 세부적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들에 대한 공통 인식이 필요하다.³⁰⁾

끝으로, 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의 용이성 측면에서 공동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자원개발회사들은 자원개발의 정치적 리스크가 큰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만, 공동개발 구역으로 합의되는 경우 이런 위험이 감소

하게 되어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³¹⁾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당사국간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경우 이 공동개발 방식에 따른 자원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2) 공동개발의 사례와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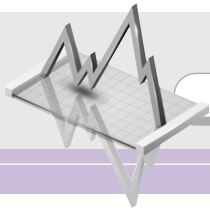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가) 공동개발의 사례

1974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1989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티모르 갭(Timor Gap) 공동개발협정과,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와 호주 사이의 티모르해 공동개발협정(Timor Sea Treaty) 및 2003년 나이지리아와 상투메 프린시페 사이의 기니만(Gulf of Guinea) 공동개발협정 등이 공동개발의 주요한 사례들이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이루어진 1989년 협정을 살펴보면, 처음 해양경계획정이 문제되었던 1972년에는 동티모르가 포르투갈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당시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자연적 연장선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 쪽에 가까운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협정이 이루어졌으나 포르투갈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75년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무력으로 침공하여 식민지화하였고, 1989년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당시까지 해상경계가 획정되지 않고 있었던 티모르 갭(Timor Gap) 해역에 대한 공동개발에 합의하였고 1991년 발효하게 된다.

30) Ana E. Bastida, Adaeze Ifesi-Okoye, Salim Mahmud, James Ross, Thomas Walde, 'Cross-Border Unitization and Joint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2007) 29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71.

31) R.R. Churchill, 'Joint Development Zones: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Hazel Fox(ed),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1990) 57.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된 가장 큰 이유는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는 인도네시아와 자연적 연장선 원칙을 주장하는 호주 사이에 해상경계획정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웠지만,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풍부한 석유와 가스자원의 개발이 양국 모두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된 티모르 갭 지역은 약 65,000km²에 이르며, 티모르 해저분지(Timor Basin)와 보나파르트 걸프 분지(Bonaparte Gulf Basin)를 포함하고 있다.³²⁾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양국의 상충된 주장에 따라 공동개발구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자원개발의 이익을 중앙 지역인 A에서는 50:50, 호주 쪽에 속하는 B에서는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90:10,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그 반대로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90:10의 비율로 귀속되도록 합의되었다.

물론, 티모르 갭 조약에는 공동개발구역의 설정이 해당 해역의 해상경계획정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³³⁾ 티모르 갭 조약의 유효기간은 초기 40년을 원칙으로, 20년 마다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³⁴⁾

공동개발구역 A에서의 석유·가스 개발과 관련된

탐사 및 생산의 관리에 대한 감독권은 공동위원회(Joint Authority)에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감독권은 티모르 갭 조약, 석유광업행위 규정(Petroleum Mining Code)³⁵⁾ 및 생산물분배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원주권주의와 중요 천연자원의 중앙정부 통제를 강력히 하기 위해 생산물분배협정을 기본적 개발계약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연방과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 및 양허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는 호주가 상호 합의에 의해 공동개발구역 A에서는 생산물분배협정 방식을 따르기로 정했으며, 표준협정서도 조약에 첨부되어 있다. 위의 공동위원회는 장관급협의체(Ministerial Council)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장관급협의체는 공동개발구역 A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협약 당사국들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공동개발협정의 주요내용

공동개발협정의 체결과정에서 우선 논의되어야 하는 내용은 공동개발구역의 범위 확정과 해당 공동개발구역에서 개발될 목적물을 규정하는 문제이다.

공동개발구역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당사국간에

32) 만약 인도네시아의 주장대로 중간선 원칙에 따른다면 티모르 분지와 보나파르트 걸프 분지의 약 1/3이 인도네시아에 귀속되는 반면, 호주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티모르 분지와 보나파르트 걸프 분지 모두가 호주에 귀속되게 됨.

33) Article 2, The Zone

3. Nothing contained in this Treaty and no acts or activities taking place while this Treaty is in force shall be interpreted as prejudicing the position of either Contracting State on a permanent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in the Zone of Cooperation nor shall anything contained in it be considered as affecting the respective sovereign rights claimed by each Contracting State in the Zone of Cooperation.

34) Article 33, Term Of This Treaty

1.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for forty (40)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2. Unless the two Contracting States agree otherwise, this Treaty shall continue in force after the initial forty (40) year term for successive terms of twenty (20) years, unless by the end of each term, including the initial term of forty years, the two Contracting States have concluded an agreement on a permanent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in the area covered by the Zone of Cooperation.

35) 협정서에 광업행위 기준이 첨부되어 있음.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중첩되는(Overlapping Claims) 지역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일반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지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둘 이상의 이해 당사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개발구역 범위의 획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공동개발구역을 정하는 방법도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동개발구역을 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수의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여 각 구역마다 개발, 운영, 수익배분 조건이 다르게 주어지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호주-인도네시아 공동개발협정은 후자에 속한다.

공동개발구역에서 개발될 자원은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 모두를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원에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개발구역에서 생산한 자원의 분배 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자원의 분배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생산물 분배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이해당사국간의 원만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원의 분배는 각 사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 탐사 결과나 각 국가가 주장하는 영유권 면적 및 역사적·정치적 상황 등의 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동개발구역은 이미 이해 당사국간에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방법으로는 특정 국가가 관리권을 행사하는 방식, 별

도의 조직(Joint Venture)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 등이 있다.

탐사와 개발에서 실질적인 시행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를 운영자로 볼 수 있는데, 누가 운영자이며 그의 권한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자원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다.³⁶⁾ 일반적으로 공동개발협정에서는 개발권 부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거나, 개발권자의 선정과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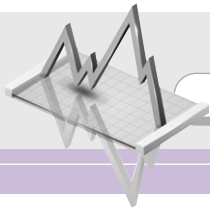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공동개발구역에서 생산된 자원에 대한 조세부과 문제 또한 중요한 쟁점 사항인데, 특정 당사국의 세법을 따르거나, 개발권을 부여한 국가의 세법을 따르는 방법 및 공동위원회가 마련한 독자적인 조세기준에 따르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개발권자가 이해 당사국 모두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해 당사국간 생산물에 대한 분배 비율에 따라 조세부담도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도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준거법과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어떤 방식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는 공동개발협정의 성공여부와 투자비 회수와 이윤확보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쉽게 간과하지 않아야 할 사항이다.

다. 광구통합방식

1) 광구통합방식의 개념

36) 류권홍, 「국제 석유·가스 개발과 거래 계약」, 2011, p. 196, pp. 201-209.



광구통합은 공동개발과 다르게 석유·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국경분쟁은 없으나, 석유·가스가 일정한 국가의 영역 범위를 넘어 인접국가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한 방법이다.

사실상 광구통합은 국경 자체에 대한 분쟁은 없으나, 누가·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생산된 석유·가스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게 된다.

광구통합은 지중의 석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법률적 구조를 가진 미국에서 소규모 난개발로 인한 생산효율 감소 및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한 제도이다.³⁷⁾ 즉, 광구통합이란 하나의 매장지(Reservoir)에 다수의 개발구역(Tracts)이 존재하며 해당 개발구역마다 별개의 개발권이 부여되어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든 개발권자들이 각자의 개발권역이나 개발계약을 초월하여 하나의 개발단위를 형성하고 단일한 운영권자에 의해 생산하도록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 광구분할현상은 1973년 석유파동으로 많은 국가들과 석유 메이저들이 자원 확보경쟁에 뛰어들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새로운 지역에서의 석유·가스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서 발생하였다. 또한 석유 메이저 이외의 독립계 회사들도 경쟁적으로 개발에 착수함으로 인해 많은 광구들이 소규모로 분할되어

개발되는 현상이 더욱 촉진되었다.

자원보유국의 입장에서도 소규모 유전을 다수의 개발회사가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자원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신속하게 창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세분화된 광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여기에 더불어 광구반납(Relinquishment)은 기존 매장지에 많은 개발구역이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특히 매장지가 국경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와 해양에서의 석유·가스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매장지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동에 의한 효율성 증진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 간 광구통합이 증가하게 되었다.³⁸⁾

국제적 광구통합은 우선 석유·가스가 인접해 있는 다른 개발권자의 개발구역에 공통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지질학적인 이유와 지질학적으로 공통된 매장지는 아니지만 기초설비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이유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앙골라와 중국의 광구통합이 후자의 경우로써, 광구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업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광구들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다.³⁹⁾ 또한, 2002년 에콰도르의 석유 규정도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증진을 목적으로 광구통합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37) 류권홍, 위의 책, pp. 228-230.

38) Jacqueline Lang Weaver, David F. Asmus, 'Unitizing Oil and Gas Fields Around the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Laws and Private Contracts' (2006) 28 Houston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

39) Angola, Mode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1997,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between Sociedade Nacional de Combustiveis de Angola - Unidade Economica Estatal (Sonangol, U.E.E.).

Article 27 Unitization

2. Sonangol, by means of written notice addressed to Contractor Group and the other entities as aforesaid, may also require that a similar procedure to that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be adopted, in relation to other existent Petroleum deposits within the Contract Area, if these are commercially viable only when developed together with Petroleum deposits in areas adjacent to the Contract Area.

2) 광구통합의 사례

대표적인 광구통합의 사례로는 영국과 노르웨이의 1976년 프리그 광구통합(Frig Agreement), 1979년 스타트포트 광구통합(Statfjord Agreement), 2002년 나이지리아와 적도 기니 사이의 광구통합 및 2003년 호주와 동티모르의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광구통합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 나이지리아와 적도 기니 사이의 광구통합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니만을 둘러싸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 사이에 해양 영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어 왔다. 특히 적도 기니는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의 앞 바다에 비오코(Bioko)라는 큰 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및 카메룬과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다.

나이지리아-상투메 프린시페 사이에서는 해양 영유권의 획정이 불가능하여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였던 것과는 달리, 나이지리아와 적도 기니는 2000년 9월 23일 해양경계의 획정에 합의하였다.⁴⁰⁾

한편, 나이지리아-적도 기니 경계획정 조약 제6조에서는 해양경계가 획정된 양 국가에 걸쳐 존재하는 석유·가스의 개발을 위한 광구통합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와 적도 기니는 기존 개발권이 부여된 광구들의 통합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2002년 4월 2일 체결하게 된다.⁴¹⁾

이 협약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광구통합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나이지리아와 적도 기니의 통합대상 광구에서 기존에 개발권을 취득한 개발업자들 사이에 ‘통합개발협정(Associated Commercial Agreements)’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개발협정은 광구통합과 광구운영협정, 원유 처리 및 취급에 관한 협정, 원유인수협정, 판매지원협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²⁾

개발권자들은 통합개발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협정을 양국 정부의 사전적인 서면 승인을 거쳐 체결할 수 있으며, 광구 통합에 대한 재결정(Re-determination)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개발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적도 기니 법률로써 나이지리아 법률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적도 기니는 통합광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나이지리아의 이익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에 관하여 나이지리아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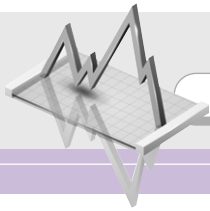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40) Trea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and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Concerning Their Maritime Boundary.

41) Protocol in Implementation of Article 6.2 of the Trea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and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Concerning Their Maritime Boundary.

42) Article 1

(b) Associated Commercial Agreements" mean the following agreements signed on --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ncession holders for Nigeria's Block 102 and Equatorial Guinea's Block B, and such supplemental agreements as may be appro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is Protocol:

- (i) Unitisation and Unit Operating Agreement;
- (ii) Crude Processing and Handling Agreement;
- (iii) Ekanga Lifting Agreement; and
- (iv) Marketing Services Agreement.



있다.⁴³⁾ 적도 기니는 시설물 운영의 안전 및 감독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⁴⁴⁾

나이지리아-적도 기니 광구통합에서의 분쟁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국들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국의 최고통치권자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⁴⁵⁾

더불어, 나이지리아-적도 기니 광구통합협정은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⁴⁶⁾ 비상사태 해결에 관한 절차,⁴⁷⁾ 광구통합 이외의 사항에 관한 각 국의 주권불가침 조항⁴⁸⁾ 등도 규정하고 있다.

3) 광구통합의 주요내용

광구통합에 관한 일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광구통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법률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 광구통합을 규정하는 것보다 표준개발협정(Model Host Government Contract)에 광구통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⁴⁹⁾ 둘째, 많은 국가들이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광구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발적 광구통합(Voluntary Unitization)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자발적 통합이 실패한 경우에만 강제적 광구통합 절차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광구통합과 관련된 법률들은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법률의 대부분이 통합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개발협정보다 광구통합에 의한 자원개발이 더 큰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

광구통합에 관한 실체법(Substantive Laws)을 두고 있는 경우로써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및 에콰도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2000년 석유·가스법 제13조에 명시적으로 석유·가스 개발협정에 광구통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⁵⁰⁾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및 영국처럼 실체법은 아니지만 광구통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다 법칙지위는 떨어지지만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육상에서의 석유 생산에 관한 명령 제25조에 광구통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⁵¹⁾

43) Article 4.

44) Article 5.

45) Article 12.

46) Article 9.

47) Article 11.

48) Article 13.

49) Jacqueline Lang Weaver, David F. Asmus, Unitizing Oil and Gas Fields around the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Laws and Private Contracts(2006) AIPN 25.

50) The Oil and Gas Law of the Azerbaijan Republic, Parliament Commission Draft, April 13, 2000(Barrows Supp. No. 43, Russia & NIS) Article 13, Unitization

The Exploration, Development and Production Contract shall provide that in cases where a portion of a single Oil and Gas field is located in one Contract Area and the remainder of the field is located in the Contract Area of one or more other Exploration, Development and Production Contracts, the respective Contractors may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Proper Executive Authority for joint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the Oil and Gas resources of the unitized field.

51) Petroleum(Production)(Landward Areas) Regulations, 1995(PEPS) 25 Unit Development

앙골라, 중국 등은 법률이나 하위 법령이 아닌 표준 개발협정서에 광구통합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앙골라의 1997년 표준생산물분배협정 제 27조는 광구통합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⁵²⁾

한편, 러시아나 예멘은 법령이나 표준개발협정서 어디에서도 광구통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멘이 광구통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1992년 레드 이글 생산물분배협정(Red Eagle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의 보존(Conservation) 규정에 따르면 석유의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에 의해 일체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광구통합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표준개발협정서에 광구통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법령에만 광구통합이 존재할 뿐 표준개발협정서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는 등 각국의 입법태도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광구통합은 우선 개발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

들이 통합에 관하여 자율적인 광구통합을 이룰 수 없을 때 정부의 관여에 의한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광구통합은 자율성과 강제성이 혼합된 '강제적이고 자율적인 광구통합(Compulsory Voluntary Unitization)'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광구통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산물에 대한 분배 방법에 대한 내용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국가에서 생산물의 분배는 형평에 맞게(Equitable)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앙골라는 광구통합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합당한 수준의 회수율이 개발권자들에게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³⁾ 나이지리아와 영국의 관련 규정들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Fair and Equitable)'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⁴⁾ 영국의 경우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이에 관한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원칙으로는 개발권자 사이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석유·가스에 개발에 대한 경제성의 최적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⁵⁵⁾

광구통합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개발권자들과 자원보유국 정부는 수익과 직결되는 광구통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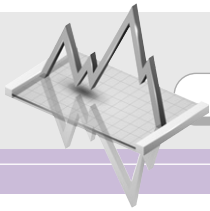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52) Mode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1997,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between Sociedade Nacional de Combustiveis de Angola -Unidade Economica Estatal(Sonangol, U.E.E.).
Article 27 Unitization

1. In the event of there being Petroleum deposits, capable of a commercially viable Development which extends beyond the Contract Area, and where other entities have agreements for the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Petroleum with a similar Unitization provision, Sonangol may, by means of written notice addressed to Contractor Group and said other entities, require that the Petroleum in those deposits should be developed and produced in mutual cooperation. - 이하 생략.

53) Mode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1997 Article 27.

54) Petroleum(Production)(Landward Areas) Regulations, 1995

25.4 If a development scheme shall not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within the period so stated or if a development scheme so submitted shall not be approved by the Minister, the Minister may himself prepare a development scheme which shall be fair and equitable to the Licensee and all other Licensees, and the Licensee shall perform and observe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thereof.



인해 조세나 로열티 등의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간 광구통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 중, 로열티 및 조세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광구통합에 관한 일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광구통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법률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 광구통합을 규정하는 것보다 표준개발협정(Model Host Government Contract)에 광구통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⁵⁶⁾ 둘째, 많은 국가들이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광구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발적 광구통합(Voluntary Unitization)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실패한 경우에만 강제적 광구통합 절차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광구통합과 관련된 법률들은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법률의 대부분이 통합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개발협정보다 광구통합에 의한 자원개발 과정에 더 큰 신축성이 발휘될 수 있다.

라. 광구통합과 공동개발의 차이점

이상에서 살펴본 광구통합과 공동개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광구통합은 기존에 발견된 석유·가스의 매장구역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공동개발협정은 석유·가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정되어 있지 않은 탐사단계 이전의 상황에서 이루어진다.⁵⁷⁾

둘째, 광구통합의 대상은 개별적인 매장지 또는 광구에 의해 결정되는데 반하여, 공동개발협정은 매장지 또는 광구의 개념보다는 국경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분쟁지역(Disputed Jurisdiction)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이 결정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⁵⁸⁾

셋째, 광구통합에서는 이미 개발권을 취득한 개발권자들이 하나의 개발계획과 통합된 광구에 대한 운영협정을 작성하고 이해 당사국들의 승인을 취득하는 절차에 따르지만, 공동개발협정에서는 통상적으로 협정 자체에 개발에 관한 운영·감독·계약조건의 형성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다.⁵⁹⁾

넷째, 광구통합에서는 통합된 광구에 대한 개발권자들의 몫이 각자의 참여지분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55) DTI Oil and Gas Directorate – Regulation Guidance notes

Licencees should be aware that:

a. The Secretary of State will not necessarily refuse to grant development consent to a particular group of Licencees who have not concluded an agreement with the Licencees of an adjacent block on the basis that they have not concluded a unitisation agreement. The Department does not consider that powers to require unitisation extend to issues of fairness and equity between groups of Licencees. The Department's position is that proprietary rights do not exist in unextracted hydrocarbons under the UKCS and ownership of hydrocarbons arises only once they have been extracted under appropriate regulatory consent.

b. The Department's acceptance or rejection of any Field Development Programme will, therefore, be on the basis of whether or not it is an optimum development in terms of maximising the economic recovery of oil and gas. If, in any intended development, there is a likelihood of claims or disagreement between adjacent licence groups related to the field's extent, the Department should be consulted at an early stage.

56) Jacqueline Lang Weaver, David F. Asmus, above n. 50, 25.

57) Karla Urdaneta, 'Transboundary Petroleum Reservoirs: A Recommended Approach for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in the Deepwaters of the Gulf of Mexico' (2010) 32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79.

58) Ibid.

59) Ibid.

공동개발협정에서 자원의 분배비율은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다는 차이가 있다.⁶⁰⁾

4. 결론

영유권 분쟁지역에 존재하는 석유·가스의 소유권 귀속문제, 경계를 획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석유·가스를 개발하는 방안들에 대한 이론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석유 및 가스의 소유권 귀속문제에 있어서는 자원 소유권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원칙이 선점의 원칙에서 협동의 원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개발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동개발과 광구통합이라는 현실적 관행과 유엔 해양법협약 등의 취지 그리고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자원개발에 관한 국제사법기관들의 판결들로 인해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의 해결은 이해 당사국 간의 평화적 합의에 따르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다.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분쟁에서 조례, 현상유지의 원칙과 실효적 지배의 원칙들만이 법적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며, 해상경계획정에서는 등거리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모두 고려하는 2원적 해결방식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자원개발은 선 분쟁해결 후 자원개발 방식과 선 자원개발 후 분쟁해결 방식으로 구분된다. 선 분쟁해결 후 자원개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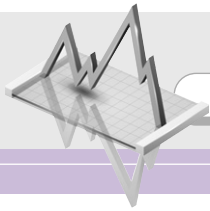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은 분쟁해결에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나 분쟁해결 이후 자원개발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선 자원개발 후 분쟁해결 방식은 신속한 자원개발로 이해 당사국의 경제적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자원개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지역의 자원개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공동개발 방식이며, 국가간에 걸쳐 존재하는 자원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광구통합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유 및 가스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 및 가스 자원의 확보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필수적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자원개발 전략의 수립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에너지 메이저기업들이 상업성이 높은 석유 및 가스전의 개발권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유권 분쟁지역의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험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원개발 권리의 확보가 분쟁발생 위험이 없는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는 점도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 중인 국내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유권 분쟁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60) Ibid.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국들과 해상 영유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해상 영유권 문제인 독도·동중국해·서사군도·남사군도 등과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국제적 영유권 분쟁사례들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간 영토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복잡한 문제의 특성을 가지는 영토분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제시된 보고서들에 제시된 방안들인 동중국해 등 유전개발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여, 공동개발의 추진 및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의 구축 등 이외에도 다양한 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⁶¹⁾

참고 문헌

〈국내 문헌〉

류권홍, 「국제 석유·가스 개발과 거래 계약」, 2011
이달석,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 연구: 주변국의 개발 전략 및 상호 갈등요인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외국 문헌〉

Ana E. Bastida, Adaeze Ifesi-Okoye, Salim

Mahmud, James Ross, Thomas Wälde, "Cross-Border Unitization and Joint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29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7

David D. Caron,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and the Coming Uncertainty in Oceanic Boundaries: A Proposal to Avoid Conflict," Maritime Boundary Disputes, Settlement Processes, and the Law of the Sea, 2009

David N. Ong, "Joint Development of Common Offshore Oil and Gas Deposits: "Mere" State Practice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9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9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 2008

Jacqueline Lang Weaver, David F. Asmus, Unitizing Oil and Gas Fields around the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Laws and Private Contracts, AIPN, 2006

Jacqueline Lang Weaver, David F. Asmus, "Unitizing Oil and Gas Fields Around the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Laws and Private Contracts," 28 Houston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61) 이달석,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 연구: 주변국의 개발전략 및 상호 갈등요인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pp. 59-64.

Law, 2006

Karla Urdaneta, "Transboundary Petroleum Reservoirs: A Recommended Approach for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in the Deepwaters of the Gulf of Mexico," 32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0

Paul Stevens, "National oil companies and international oil companies in the Middle East: Under the shadow of government and the resource nationalism cycle," 1(1) Journal of World Energy Law and Business, 2008

R. Bundy, "Natural Resource Development(Oil and Gas) and Boundary Disputes," G.H. Blake(ed), The Peaceful Management of Transboundary Resources, 1995

R.R. Churchill, "Joint Development Zones: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Hazel Fox(ed),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1990